

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-33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3. .

제출자 : 동두천시장

1. 개정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이 2008. 12. 26. 개정(법률 제9194호 시행일: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)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유재산 분류체계 단순화

- 기존 행정.보존재산 → 변경 행정재산(안 제4조제2항제3호)
- 기존 잡종재산 → 변경 일반재산(안 제4조제2항제4호)

나.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

- 기존 2천만원→변경 3천만원 (안 제4조제3항제3호)

동두천시조례제 호

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, 제20조, 제21조 제명, 제21조제1항부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조 제5항 중 “행정·보존재산”을 각각 “행정재산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, 제22조 제명, 제4장 제명, 제23조, 제37조제1항부터 같은조 제5항 중 “잡종재산”을 각각 “일반재산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제3호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제4호 , 제17조,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, 제19조 중 “행정재산 · 보존재산”을 각각“행정재산”으로 한다.

제3장 제명 중 “행정재산 및 보존재산”을 각각“행정재산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9.4.27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회 계 과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회계과장 홍 재 설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재산관리담당 김 용 숙
	담 당 자 성명 · 전화	이 수 동 2046 · 2174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시 공유재산심의회) ①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2. (생략) 3. 행정·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. 집중재산의 용도 변경 5. (생략) ③제2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.~ 2.(생략) 3. 대장가액 <u>2천만원</u> 이하의 재산 취득·처분 4.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·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. ~다. (생략)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7조(관리 및 처분)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·보존재산의 유지·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. 제18조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 ①행정재산·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·수익허가 하여야 하며, 당해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 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. ②행정재산·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·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~ 2. (생략) 제19조(사용·수익허가) 행정재산·보존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 1. ~ 7. (생략) 제20조(사용·수익허가부의 비치)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·보존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	제4조(시 공유재산심의회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1.~2.(현행과 같음) 3. <u>행정재산</u>----- ----- ----- 4. 일반재산----- 5.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1.~2.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3천만원</u> ----- ----- 4. ----- <u>행정재산</u> ----- ----- 가. ~다. (현행과 같음) 제3장 행정재산 제17조(관리 및 처분) ----- <u>행정재산</u>----- ----- ----- 제18조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 ①<u>행정재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②<u>행정재산</u>----- ----- ----- 1.~2. (현행과 같음) 제 1 9 조 (사 용 · 수 익 허 가) <u>행 정 재 산</u> ----- ----- 1. ~ 7. (현행과 같음) 제20조(사용·수익허가부의 비치) ----- ----- <u>행정재산</u> ----- ----- -----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행정·보존재산의 위탁관리)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·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,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·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·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·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받은 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. ④ (생략)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위탁받는 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·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 ⑥ (생략)	제21조(행정재산 -----) ①----- --- 행정재산----- ----- ②----- 행정재산----- ----- 행정재산----- ----- ③----- 행정재산-- ----- ----- ④(현행과 같음) ⑤----- 행정재산-- ----- ----- ⑥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잡종재산 대부의 준용) 사용료의 요율, 일시사용허가,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22조(일반재산 ----) ----- ----- -----
제4장 잡종재산	제4장 일반재산
제23조(연고권 배제)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.	제23조(연고권 배제) 일반재산 ----- ----- -----
제37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1.~6.(생략)	제37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----- ----- 일반재산----- ----- ----- 1.~6. (현행과 같음)

- 36 -